

보 도 자 료

KCGI, “조원태 대표이사 측 상품권 등으로 소액주주들 위임장 사고자 해”

-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조원태 대표이사 등을 상법상 이익공여죄로 서울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
 - 자가보험 등의 5%보고의무 위반 관련 금융감독원에 조원태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, 행정제재 요청
- 최근 (주) 한진칼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일부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조원태 대표이사 측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해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
- 이에, KCGI는 금일 (주) 한진칼 측이 금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 받기 위해 일부 주주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사실과 관련하여 조원태 대표이사 등을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하였습니다.
-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회사가 계산한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행위가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시한바 있습니다.
- 우리 상법은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(상법 제 467조의2), 이를 어긴 회사 이사, 감사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(상법 제634조의2 제1항).
- 회사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받기 위해 일부 주주들에게만 이익을 제공한 것은 상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. KCGI는 (주) 한진칼의 경영진이 또 다시 한진그룹에 해가 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.
- 한편 대한항공은 조원태 대표이사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가보험, 대한항

공사우회 등 특별관계자들이 지분공시를 회피할 수 있는 5% 이하로 한진칼 주식을 보유하면서,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5%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.

- 이에 KCGI 측은 지난 3월 16일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법 제444조, 제147조에 따라 조원태 대표이사 및 위 특별관계인들을 형사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제재를 내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- 조원태 대표이사 등의 상법상 이익공여죄 혐의, 자본시장법상 5%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져, 구태 의연한 위법행위의 진상이 조속히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.

본 자료는 이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 되었습니다. 제시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기술적 오류나 인쇄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정보 제공 후 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의 정확도, 완성도,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으며, 본 자료에서 최신의 내용을 유지할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귀하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상의 참고자료로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또한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에서 제공된 정보와 관련된 모든 손실, 손해(간접, 특별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)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, 본 자료는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의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 등은 할 수 없습니다.